

「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의안번호 제1334호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·운영
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동의안은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3 및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
- 장애인 학대 등 피해 장애인에게 주거 및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
-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